##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52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이준석ㆍ이주영ㆍ천하람

김상훈・김 건・주호영

우재준 • 모경종 • 김용태

장경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 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 매중개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및 대출의 제공·알선·중 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신 판매중개자로부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이 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	2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	
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	
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	
위를 말한다. <u>다만, 재화의 공</u>	<u>&lt;단서 삭제&gt;</u> 이
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	의 제공 및 대출의 제공・알
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	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
한 행위는 포함한다. <후단	<u>함한다.</u>
<u>신설&gt;</u>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의2. ~ 7. (생 략)	2의2. ~ 7.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제4조(지급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	
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 설>

3. ~ 5. (생략)

② ~ ④ (생 략)

 _
 _
 _
 _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 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 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로부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